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1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현 재
장 관

◎法律 第7336號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하고, 동조동호차목중 “증권투자회사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제4조”를 “제4조·제4조의2”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보고등)”을 “(금융기관등의 협의거래보고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①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기관등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호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을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사건”으로,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를 “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조사”를 각각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중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를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을 개정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 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와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법 제4조의2 신설)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현금 거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거래 등의 경우 이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 나. 금융기관 등의 고객주의 의무(법 제5조의2 신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 다. 검찰총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법 제7조제1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던 것을 검찰총장·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법 제10조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외에 고액현금거래정보 또는 외국환거래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 1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 헌 재

◎法律 第7337號

信託業法中改正法律

信託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전신탁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하 “종합재산 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이 포함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250억원 이상
2.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이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제3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세부요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인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상황 등 경영상태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체제 등 그 업무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제4호 및 제6호중 “이 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 令”을 각각 “이 법 또는 外國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大統領령이 정하는 金融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金融관련법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